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배출가스저감장치,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(법률 제19660호, 2023. 8. 16 공포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미인증 제품의 판매·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, 회수·폐기 등 조치명령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·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,

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징수 시기를 자동차제작자별 실적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3제2항 중 “연도의 다음 연도에”를 “날부터 2년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해 9월 30일까지”를 “날부터 60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(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)”를 “(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업무만 위임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측정(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)”을 “측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(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”을 “사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를 각각 제4호의22 및 제4호의2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1.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, 폐기 등의 조치명령

별표 15 제2호퍼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무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퍼목 및 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퍼. 법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,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	법 제94조 제1항제3호	300	400	500
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한 경우 허. 법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 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,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 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	법 제94조 제1항제10의2호	100	150	200
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3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
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0조의3(과징금 산정방법 등)	제60조의3(과징금 산정방법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<u>연도의 다음 연도에</u>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날부터 2년 이내</u> ----- ----- -----.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<u>해 9월 30일까지</u>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.	③ ----- ----- <u>날부터 6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63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63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	②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79